

#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## 제 8 장 대학원 위원회

**제37조(대학원 위원회)** ①대학원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(당연직)과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한다.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.

③대학원 위원회는 교육과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제안·심의한다.

1. 대학원 학제 개편에 관한 사항
2. 대학원 간의 통·폐합 및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전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4.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④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38조(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)** ①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별로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 한다.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·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3. 장학에 관한 사항
4. 학과간의 통·폐합에 관한 사항
5.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세부적인 내규 및 규정에 관한 사항
6. 지역사회 위탁과정에 관한 사항 및 대외 전문연구 인력과의 유기적 학술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및 대학원 특성화에 대한 과제 연구
8.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39조(심의)** ①대학원 위원회나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내용을 정한다.